

| |
|-----------------|
| 제340회 제1차 정례회 |
| 제1차 교육위원회 |
| 2023. 6. 19.(월) |

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
교육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290 |
| 발의일자 | 2023. 5. 31 |
| 회부일자 | 2023. 6. 2 |



교 육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박채아 의원 외 21명

2. 제정이유

-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투약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의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학생을 마약이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의 정신건강, 신체 건강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조 ~ 4조)
- 나.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 7조)

라. 매년 6월 26일, 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마.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나.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다.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해당부서의견: 의견없음

마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7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

○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,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투약, 취급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적 큰 문제로서 대응 방안 및 예방 안의 수립 요구가 대두됨.

○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「2022년 10대 마약 전수 분석」에 따르면, 1,290건의 분석 건 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이

며, 중학생 이하의 나이에서는 여학생의 투약률이 남학생의 2배,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의 고등학생 시기는 전체 투약률의 80%의 비중을 차지함.

- 이와 같은 배경 및 필요성을 토대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여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의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마약류 및 약물의 정의를 규정함
-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5조는 교육감이 3년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7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
- 안 제8조는 매년 6월26일,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9조는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11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최근 외국을 중심으로 값싼 저급마약(ex. 펜타닐, 1회 투약 시 비용 약 1천원)의 유통이 급증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황임.
- 특히, 마약 청정국이라고 믿고 있던 우리나라도 국과수의 자료에 따르면 약 290명의 청소년 투약자가 있으며,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교육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살피건대, 본 조례안은 마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요소, 사회악으로부터 학생 스스로 인식을 통해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한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